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3. 12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서민우 의원 등 6명(서민우, 이영빈, 박정환, 정창근, 김기열, 임미연)
- 발의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3. 12.)

## 2. 개정이유

- 달서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규정(안 제5조의 2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  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
  -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2. 28. ~ 2024. 3. 8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 단서와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달서구 관광진흥을 위한 기념품의 무상제공을 위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비롯한 65개의 문화관광축제와 장미꽃 필 무렵 축제를 비롯한 981개의 전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신들의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,
- 달서구 또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달토기빵 등을 비롯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통해 달서구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홍보물의 제작 및 배부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,
- 개정조례안은 홍보물 등의 무상제공을 위해 이를 조례로 명시하도록 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정책의 시의적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관광상품의 제작 및 배부가 그 목적에 부합하고, 달서구의 관광진흥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업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